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3. 3. 9.>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구분	기준
1. 허가사용자	
가. 생산 또는 판매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나. 사용	
1)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가) 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다. 이동사용 1)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2) 1) 외의 경우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1) 방사선훈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1) 방사선훈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신고사용자: 사용 및 이동사용	(1)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